



SW 임치 (Escrow) 제도의 이해

제도가 알려져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SW 임치제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3년에 미국의 유명한 임치기관인 DSI사를 방문했을 때 한 관계자가 1970년대에 미국에 소개된 SW 임치제도는 그 유용성이 알려져서 정착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게 생소한 SW 임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SW 임치제도의 메커니즘과 국내외 임치기관 등을 살펴보고, 임치사례를 통해 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소개 한다. 그리고 최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자료 예치제도의 주요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글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연재순서	
7	디지털콘텐츠와 기술적 보호조치
8	BM 특허
9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10	P2P 분쟁 -소리바다사건-
11	하이퍼링크의 법적 문제
12	SW 임치제도

막 대한 비용을 들여서 기업 활동의 핵심 솔루션을 구매하고 사용해 오던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기업에 유지보수를 요청했으나 당해 기업이 파산하여 사라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를 이미 오래 전에 경험했던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임치제도(SW Escrow)를 만들어 원시코드(source code)와 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에 맡겨두고 개발기업의 폐업·파산 등으로 더 이상의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임치된 원시코드와 기술정보를 수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W 임치란

SW 임치제도(Software Escrow)란 소프트웨어 거래시 저작권자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 3기관(수치인)에 맡겨 두었다가 저작권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계약상의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 수치인이 소스코드 등을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소스코드가 멸실한 경우에 사용권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되어 뜻하지 않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소스코드(원시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수치인에게 임치하고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수치인에게 임치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W 임치를 목

적으로 한 이러한 약정을 'SW 임치계약' 이라고 한다.

한편, 개발업체의 입장에서 SW 임치제도를 활용할 경우 SW 개발용역에 있어서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정보를 발주기업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SW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아도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저작권을 보유함으로써 버전업(version up) 등 후속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SW 임치제도는 이미 20~30년 전에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탄생했지만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와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그 법적 근거(제20조의2)를 마련하게 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SW 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활발히 이용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 따라서 우리나라 SW 업체가 이 제도의 유용성을 활발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SW 임치기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와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즉 SW 임치를 할 수 있는 자로서는 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관리기관, ②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③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 받을 능력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있다(시행령 제10조의2). 그러나 현재 SW 임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유일하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임치제도를 이용한 업체 수는 2003년 25개에서 2004년 80개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의

이용 건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5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임치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용도가 점차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SW 임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다수의 민간 기업들(Iron Mountain, DSI, EscrowTech International 등)에 의해서 SW 임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몇몇의 민간 기업들과 통상산업부의 외부기관인 NCC(National Computer Center)에 의해서 임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 밖에 프랑스에서는 APP(A pour la Protection des Programmes)가 대표적인 임치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1986년에 설립된 SOFTIC(Software Information Center)이 대표적인 민간·비영리 임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SW 임치계약 유형

SW 임치계약의 유형은 크게 양자간 계약과 3자간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저작권자가 다수의 사용자들을 위하여 수치기관과 단독으로 체결하는 임치계약을 말하며, 후자는 사용자가 단일한 경우에 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사용권자·수치기관 간에 체결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SW 임치제도 안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와 수치인간의 양자간 SW 임치계약은 저작권자와 다수의 사용자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전제로 한다. 즉, 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임치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사용자간에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임치계약 체결 후에 저작권자가 또 다른 사용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작권자는 임치계약에 새로운 사용자들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양자간 계약이든 3자간 계약이든 임치계약상의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등록된 사용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임치물이 양도된다.

기술 검증

회사의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W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SW 사용의 담보를 원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임치제도를 활용한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연 임치된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가 적절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임치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스프로그램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증하는 '기술검증제도' 가 필요하게 됐다.

기술이 점차로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SW 임치제도

구분	내용	세부내용
기본확인	바이러스 검사	•백신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임치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가독성 확인	•저장매체의 판독여부 및 암호설정 여부 확인
산출물확인	제출프로그램 확인	•제출프로그램 파일·디렉토리 확인 - 소스·오브젝트·실행프로그램 확인 •외부 참조 프로그램 확인 - 모듈·함수 등
	문서 확인	•임치프로그램 유지·보수 문서 •프로그램 개발사양서 •기타 산출물 관련 문서
	검증장비 셋팅	•검증을 위한 SW 및 HW 설치·준비
기술검증	실행프로그램 생성	•검증 시나리오 확인 •임치물을 이용한 실행프로그램 생성
	환경설정 및 확인	•환경확인(Network·DB·System 등) - 환경정보 매뉴얼 확인 - 환경설정 및 확인
	결과통보	•실행프로그램을 사용권자에게 교부 •실행 결과 접수 및 통보 •임치물 봉인

자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5

법제코너

기술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이에 대부분의 국내외 임치기관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검증단계는 몇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최고 높은 단계의 기술검증은 임치비용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검증에 대한 신청 및 기술검증의 단계에 대한 선택여부는 전적으로 임치를 신청하는 사람의 의사에 달려 있다.

SW 임치사례

● 임치활용의 전형적 사례

2002년 P사는 중소벤처기업인 N사의 SW 솔루션 사용계약을 검토하던 중 영세한 N사가 파산이나 폐업 시에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계약체결을 고민하다가 결국 SW 임치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임치계약 이후 P사가 프로그램 구축을 진행해 오던 중 N사의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 SW 임치계약의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P사는 수치인에게 임치물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N사는 이를 승인하는 문서를 수치인에게 송부했다. P사는 수치인으로부터 임치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시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됐다(‘SW거래, 임치계약은 필수’, enter 2005년 7월호).

이와는 반대로 임치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로서, S 대학교는 외부기업에 의뢰하여 개발한 동문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오던 중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여 개발업체에 유지·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동 기업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대표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동문관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없었던 S 대학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재투입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 담보목적의 임치활용 사례

2003년 S기업은 K은행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한 시스템 개발용역을 수주 받은 뒤 개발업무를 일부러 I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

데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I사는 개발인력 및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구축 프로젝트에 지연이 발생하였고, 그 지연으로 인하여 15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S사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I사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그 담보로서 I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S사·I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S사·I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3자간 SW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 입회하여 기술

검증을 통하여 임치물의 실행프로그램 생성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S사는 임치계약과 동시에 I사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록했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임치제도 도입

최근 IT 분야에서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SW 개발업체들로부터 저작권 및 기술정보의 제공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시정코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를 도입하였다.

기술자료 예치제도는 구매기업(원사업자)과 납품업체(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해서 기술자료를 제 3의 기관에 예치해 두고, 납품업체의 도산 등 일정한 합의조건이 발생하면 구매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SW 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예치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는 업체에게는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하도급

거래 공정화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자료 예치는 수급사업자·원사업자·예치기관 간의 3자간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예

치기관은 예치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항온·항습 장치 및 화재·도난 등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률서비스나 기술검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면 더욱 좋다. 실제 이러한 물적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은행,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등이 있으며 기술검증이나 법률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다.

예치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원시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정보가 있는데 이는 SW 임치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기술정보의 예로서 설계서·플로우차트·사양서·유지보수자료·매뉴얼 등이 있으며 기타 개발기술자에 관한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0조의2).

기술자료 예치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매기업이 중소납품기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후에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을 근거로 하여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관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예치제도의 유용성을 전자업종에까지 확대하고자 올해 11월 8일부터 전자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도 예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